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ACT INFORMATION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33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8. 11 ~ 8. 31
- 공고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팀(02-2110-5174)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과정에 걸친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6.4.28공포)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 산업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환경부·기획예산처 차관, 중소기업청장·특허청장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제품, 지적재산권 등의 기술혁신성과물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해당 사업 기획·관리·평가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함.
- 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에 성공한 제품에 대하여 분야별로 산업자원부장관(기술표준원장)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전파연구소장)이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함.
- 라. 신기술 활용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물품의 20%이상을 인증받은 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제도를 도입함.
- 마.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장비 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일정 기준단가 이상의 장비 또는 범용성을 갖춘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장비의 활용촉진방안을 추진하도록 함.
- 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 등의 윤리경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일정 기간 산업기술혁신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 시행일

이 영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ACT INFORMATION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31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8. 10 ~ 8. 30
- 공고부처 : 산업자원부 디지털전략팀(02-2110-5156)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개정이유**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문서의 보관을 종이문서를 전자화한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점검, 업무의 양도·양수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전자문서의 적용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개별 법령에서의 문서행위를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전자화 문서 보관의 효력 신설(안 제2조 제1호의2 및 제5조 제2항·제3항 신설)

- (1) 정보처리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종이문서를 스캐닝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에 큰 효과가 있으나 전자화문서 보관의 효력 및 전자화문서 생성에 관한 기준·절차에 관해 규정된 바가 없어 전자화문서의 보관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2) 전자화문서가 대상문서와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하게 작성되고 일정한 보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전자화문서의 보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종이문서의 보관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시켜 각종 문서 또는 자료의 보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정기점검, 업무의 양수·양도 및 폐지 등 관련 규정 신설(안 제31조의4 제9호, 제31조의9 제6항, 제31조의10 제3항 내지 제5항, 제31조의13, 제31조의14 및 제31조의14 및 제46조제2항 제8호 및 제9호 신설)

- (1)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 및 폐지, 손해보험 가입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보관소 업무의 양도·양수 또는 폐지의 경우 이용자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60일전까지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의 양도·양수 또는 폐지 등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안전하게 운영됨은 물론 이용자가 보관소 폐지 등의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문서 효력의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추가)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인에게 각종 문서의 작성·보고·보관 또는 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자문서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어 전자문서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2) 각종 문서 또는 자료의 작성·보고 등의 행위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기존 28개 법률 56개 조항 이외에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5개 법률의 7개 조문을 일괄하여 규정함.
- (3) 사인이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를 촉진시켜 각종 문서 또는 자료의 보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규제영향 분석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기점검, 업무의 양수·양도 및 폐지의 경우 신고, 손해배상 보험의 가입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에게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한 운영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므로 비용보다 편익이 큼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ACT INFORMATION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44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8. 18 ~ 9. 7
- 공고부처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02-2110-5443)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개정이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산업에서 330여 종류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고압 가스안전기술기준이 법령으로 제·개정되어 옴에 따라 안전을 담보하는 새로운 생산기술 등이 반영·이용되는 데 장기간 지체 되어 산업활동의 장애가 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산업이 신기술 채택이나 국제적인 기술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면서 국가적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신기술 개발노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행 고압가스안전기술기준을 분리하여 법령에 존치할 사항과 법령이 요구하는 성능 등을 충족하는 순수 기술적 사항(상세기준)으로 운영토록 하며, 후자를 관련기업이 이행하기 쉽도록 코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기술기준 운용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기타 고압가스와 관련된 허가나 등록의 취소·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가스기술기준을 상세기준으로 분리·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제7호, 제28조제6항·제8항, 제32조의2 신설)**

- (1) 순수 기술적 사항(상세기준)까지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 가스기술기준 제·개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국제기준과의 부합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2) 산업기술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준을「상세기준」으로 정의하고, 「상세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근거와 「상세기준」의 적법간주사항을 신설함.
- (3) 가스기술기준의 신속한 제·개정체계 구축으로 기업 활성화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기술변화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정지에 해당하는 조문을 일일이 열거(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의3제4호)**

- (1) 고압가스 제조 등의 허가 및 외국용기 등의 등록취소·정지사유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자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사항이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2) 고압가스 제조 등의 허가 및 외국용기 등의 등록취소·정지에 해당하는 개별 조문을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함.
- (3) 재량권자의 재량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압가스 수입 신고대상 완화를 위한 근거마련(안 제21조)**

- (1) 수입신고 대상을 모든 고압가스로 하고 있어 관리 제외대상인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고압가스도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2) 소용량 용기에 충전되어 수입되는 고압가스와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제외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규정함.
- (3)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대상을 완화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용량 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수입신고 의무의 면제가 가능하게 됨.

라. **안전관리규정제출대상 완화를 위한 근거마련(안 제11조제1항)**

- (1) 법률의 시행 또는 해석과정에서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도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음.
- (2) 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제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3) 고압가스 운반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 제출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ACT INFORMATION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111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8. 24 ~ 9. 13
- 공고부처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02-2150-9156)

◎ 개정이유

- 기업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써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반법인과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 그 밖에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개인의 납세협력의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제도를 합리적으로개정 및 보완하려는것임.

◎ 주요내용

- 가. 기관투자자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종전 90퍼센트에서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인 30퍼센트로 축소함.
- 나.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중 종전 60퍼센트는 2007년부터 70퍼센트, 2008년부터 80퍼센트로 하고, 종전 90퍼센트는 2009년부터 10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 다. 유전자발투자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명목회사에 대하여도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
- 라.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인하함.
- 마.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
- 바.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간접투자기구의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
- 사.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5퍼센트이상 출자시에도 100퍼센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함.
- 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1(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자.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가 그 대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는 경우 미교부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차. 업종·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개시일이 2007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카. 법인인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도록 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ACT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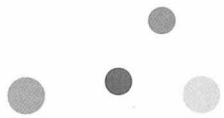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소방방재청 공고 제2006-52호
- 입법예고기간 : 2006. 8. 16 ~ 9. 5
- 공고부처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02-2100-5334)
- 전문참고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종합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

◎ **개정이유**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지하화·복합화 추세로 대형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설계 단계부터 화재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 전에 화재영향평가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구지하철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능시험기준에 미달되는 소방용기계·기구에 합격표시를 부착하여 불법유통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첨단 소방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소방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소방산업을 육



성하는 한편, 그 밖에 방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제도 도입(안 제7조의 2)

- ① 건축물의 연면적·용도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기준으로는 초고층화·심층화·복합화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 ②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 높이가 100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동의 요청 전 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③ 건축설계 단계부터 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감소와 안전한국이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방염처리업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을 명확하게 정함(안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제1항제6호)

다. 성능시험 품목의 소방용기계·기구 단속근거 마련(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

- ①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대상에 대하여 성능시험이 미달되는 제품에 합격표시를 부착하여 불법유통 되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 미비로 성능시험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음.
- ② 성능시험기준 이상의 소방용기계·기구가 유통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합격표시를 불법부착하여 판매·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단속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폐기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③ 성능시험기준에 미달되는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폐기명령을 통하여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관련 신기술의 인증·지원 근거 마련(안 제40조의2)

- ① 소방장비,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되어도 법령 근거 미비로 실용화가 곤란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소방관련 신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소방관련 기술과 신제품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소방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② 소방장비,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과 인증기술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③ 신기술인증과 인증기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방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관련 신기술·신제품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2 내지 제7조의 11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